

입법정책 정보

Legislation & Policy Information



최근 법령 정보

- 자치법규 위임법령
- 주요판례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 참고할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의정활동 정보

- 지방자치 네트워크 활동
- 주목할 타 시·도의회 동향
- 학계 동향

정책연구를 통해 본 경북

시사정보

- 최신 이슈
- 읽어 볼 만한 책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최근 법령 정보

■ 자치법규 위임법령

03

-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 자율주택사업, 시·도 조례로 지정가능 / 03
-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조례 통해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 구성·운영 / 04

■ 주요 판례

05

- 미실시 된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한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 05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06

- 자치조례의 용어 정의 규정 시, 상위법 용어 정의를 따르지 않아도 무방해 / 06
- 지방의원 발의 통한 기금 설치 조례,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 침해 아냐 / 07

■ 참고할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09

- 외로움 치유 조례, 인간의 존엄성 회복 및 행복 증진으로 자살 방지 / 09
- 관급공사장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 / 10
-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통해 안정적 생활 영위 및 주거환경 조성해야 / 11
- 고독사 예방 조례, 맞춤형 지원 사업 실시 통해 고독사 방지 및 고립가구 지원 / 12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청년 복지 향상 및 사회 안전망 확보 일조 / 13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14

의정활동 정보

■ 지방자치 네트워크 활동

15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아베정부 경제보복 강력 규탄 / 15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안부가 중앙·지방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달라” / 15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청 / 16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개관 / 16

■ 주목할 타 시·도의회 동향

17

- 전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셀프심사’ 차단 / 17
- 충북도의회, 지역상당소 설치 추진 / 17
-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법’ 추진, 공기업임원 연봉제한 조례발의 / 18
- 경기도의회, 집행부에 “전문위원실 전문가로 채우자” 촉구 / 18

■ 학계 동향

19

- 지방정부·지역사회가 독립성·자율성 보장받는 ‘지방분권형 국정경경제제’ 구축 필요 / 19

정책연구를 통해 본 경북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의 효과적인 운용방안 마련 필요 / 20
- 경상북도 지방연구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은 기록자치의 토대 / 22
-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과후 돌봄서비스 중심 허브기관으로 도약해야 / 24
- 경북, 여성친워라벨 시대!! 가족여가문화 활성화해야 / 26
- 질 높은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공 위해 두 기관 간 역할정립 및 연계 필요 / 28
- 발달장애인 자립 위해 경북형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델 운영 필요 / 30

시사정보

■ 최신 이슈

32

- 주민조례발안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 32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과 개선과제 / 33

■ 읽어 볼 만한 책

34

- 21세기 국제정치와 투키디데스 / 34
- 386 세대유감(世代遺憾) : 386세대에게 헬조선의 미필적고의를 묻다 / 34
- 무엇이 최고의 리더를 만드는가 / 35
- 정치적 올바름에 대하여 / 35

최근 법령 정보

■ 자치법규 위임법령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 자율주택사업, 시·도 조례로 지정가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6387호, 2019년 4월 23일 일부개정, 2019년 10월 24일 시행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빈집 밀집구역을 지정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이 효율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율주택사업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48조)
- 》 빈집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도록 명시했다.(제49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조례 통해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 구성·운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93호, 2019년 4월 16일 전부개정, 2019년 4월 17일 시행

- 》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전부개정 되었다.(법률 제15852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
- 》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내용으로는, 먼저 특화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추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2조)
- 》 또한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68조)
- 》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는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정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3조)

Ⅰ 주요 판례

미 실시 된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한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및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등의 취지(2018. 11. 29. 대법원 2017도8822 판결)

Q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 제252조제2항의 취지 및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지 여부(적극)

A :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제2항은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고, ‘그릇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제96조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제8조의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의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 제252조제2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타인이 위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경우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자치조례의 용어 정의 규정 시, 상위법 용어 정의를 따르지 않아도 무방해

Q.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5호다목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려는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의견 19-0196, 2019. 7. 4)

A.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부산광역시조례”라 함) 제2조제5호다목에서는 “청소년”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조례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는 경우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법령 규정과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법제처 2017. 9. 27. 의견제시 17-0253, 2016. 3. 8. 의견제시 16-0044 등 참조).

따라서 부산광역시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조례로서(제1조), 같은 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청소년 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도 아니므로, 부산광역시조례에서 “청소년”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용어 정의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원 발의 통한 기금 설치 조례,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 침해 아냐

Q. :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의견 19-0176, 2019. 6. 5)

A.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이하 “국외소재문화재”라 함)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 의원 5분의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의안의 발의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닌 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참조),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법제처 2009. 3. 15. 의견제시19-0093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등의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치사무인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관한 조례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여 예산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배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소극적·사후적으로 견제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참고할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외로움 치유 조례, 인간의 존엄성 회복 및 행복 증진으로 자살 방지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9. 8. 30.)

》 취 지

- 부산시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제3조)
-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제4조)
- 외로움의 원인과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제5조)
- 외로움 정도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시책의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명시함(제7조)
- 부산광역시 외로움 치유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시사점

- 부산은 동 조례에 따라 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과 실태 조사를 통해 '외로움 지표'를 개발·관리하고,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됨.
- 동 조례는 다양한 외로움 치유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에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삶의 희망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다시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고독사·자살과 같은 사회 문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관급공사장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시행 2019. 8. 10.)

》 취 지

- 건설산업은 산업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 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가 어려움. 또한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도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등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필요함. 따라서, 임금체불 등의 방지 시책이 적용되는 관급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관급공사의 현장에서 적정수준의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등으로 대상금액을 하향 조정함(제3조)
- 시장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의 방지,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창출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급공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샤워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함(제4조)
-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각종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의 충분한 설치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 관급공사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함(제4조의2)

》 시사점

- 관급공사 시행 시 발주청과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 등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 대한 임금과 임대료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음.
- 관급공사장에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통해 안정적 생활 영위 및 주거환경 조성해야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30.)

» 취 지

- 1인 가구가 직장·학업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임시 가구에서 만혼의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 등의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화 하는 대책 수립이 필요해짐. 이에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 지원과 이를 통한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1인 가구”, “사회적 가족”, “공유 주택(share house)”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시책 및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시사점

- 최근 노인, 독신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주거 빈곤, 소외, 안전 등의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 조례를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안정적 생활 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고용복지 등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독사 예방 조례, 맞춤형 지원 사업 실시 통해 고독사 방지 및 고립가구 지원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 2019. 5. 11.)

» 취 지

-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시장이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제4조)
-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명시함(제6조)
- 고독사예방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제13조)

» 시사점

-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1,271명에서 2018년 2,549명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만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층에서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출처 : 국회 김승희 의원실 자료).
- 부산은 동 조례에 따라 현재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 방문간호 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반찬 지원 및 건강음료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중임.
- 이렇듯 동 조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청년 복지 향상 및 사회 안전망 확보 일조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시행 2019. 1. 14.)

» 취 지

-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을 정함(제4조)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으로 정함(제5조)
- 매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도록 함(제6조)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시사점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됨.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도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은 25억원(연 8만3,912명 추산)으로 예상되고 있음. 보험금은 상해사망 5,000만원, 상해후유장애 5,000만원, 질병사망 5,000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됨.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시행 2015. 8. 13.)

》 취 지

- 현행 경남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 사항으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규정(제3조)
-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제4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일부 보조(제5조)
-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 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제6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보조비(월 70만 원)와 사망 시 장제비(100만 원)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제7조)

》 시사점

-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인 8월 14일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해 일본군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날임.
- 동 조례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을 통해 주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에 큰 기여하고 있음.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됨.

의정활동 정보

■ 지방자치 네트워크 활동

전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아베정부 경제보복 강력 규탄

- ≫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8월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부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철회를 요구했다.
- ≫ 이날 전국 17개 시도회의의장단 등 50명 광역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일본의 경제적 조치들이 아베 정부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 없는 경제침략 행위”라고 강조했다.
- ≫ 의장단은 또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각종 자료를 통해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일본이 우위에 있는 소재산업을 이용해 우리나라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가함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전국시도회의의장단은 이날 광역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집행기구와 협력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피해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행안부가 중앙·지방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달라”

- ≫ 전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소속 광역의회 의장들은 6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역량 강화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 및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 ≫ 이날 송한준 의장 등은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진영 장관에게 ‘시도회의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건의(안)’를 전달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과 국회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 이에 진영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항상 지방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중앙과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우리 지방이 자치분권을 일구는 데 방향이 서 있는 만큼 헌법상과 법률상의 제한도 합심해 잘 대처하기로 하자”고 화답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청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를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6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 ≫ 이들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 송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자치 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공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협의회는 그동안 31년 만에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방자치법지방분권TF’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 개관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8월 9일 오전 11시 세종시 어진동 661에서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세종사무소의 임대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회관’은 시·도 간 협력과 상생의 상징은 물론 인접한 정부세종청사 등 중앙부처와 신속한 업무 협의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 ≫ 이날 권영진 회장은 “지방자치회관이 지방자치의 상징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의 광장이 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방분권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기능도 지방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목할 타 시·도의회 동향

전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셀프심사’ 차단

- 》 전라남도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 ‘셀프심사’를 막는다. 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8월 20일 오후 도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위원인 나경광 변호사를 첫 민간인 출신 심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 의회는 또 민간인 출신 윤영식 변호사와 류도암 목포대 교수를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은 총 9명이며 이 가운데 민간인이 6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게 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원들의 ‘셀프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 》 이날 선출된 나경광 심사위원장은 “도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펼쳐 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반드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 당연직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서동욱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올 상반기 때 이 같은 지적을 전면 수용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추진

- 》 7월 2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이 설치될 전망이다.
- 》 이시종 충북지사는 7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충북도의원 지역상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조례에 근거해 시·군청에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상담소를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 》 현행법상 시·군 청사 등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경기도 의회도 이 같은 방식으로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법’ 추진.. 공기업임원 연봉제한 조례발의

- ≫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고 1억2천여만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6월 29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권수정 의원 등 시의원 18명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6월 27일에 발의했다.
- ≫ 의원들은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계속 커진다”며 “임원 최고임금의 상한을 정해 소득 격차를 시정,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 ≫ 조례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임원 연봉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 월 환산액은 174만5천150원이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은 2천94만1천800원 이며 조례안에 따른 상한선은 1억2천565만800원이 된다.

경기도의회, 집행부에 “전문위원실 전문가로 채우자” 촉구

- ≫ 경기도의회가 지난 6월 25일 도의회 전문위원실에 고위급 정책 전문가를 점진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경기도 집행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 ≫ 이날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용인4)는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정에 민주적 가치가 체화되려면 경기도의회의 비판과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 되어야할 것”이라며 “비판과 견제를 위해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직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 ≫ 그는 “매년 합리적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전문직으로 전환해야한다”며 “전문 위원 가운데 정년 퇴직을 해 공석이 생기는 자리를 위주로 전문인력을 영입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이어 그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며 “집행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역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의정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Ⅰ 학계 동향

지방정부·지역사회가 독립성·자율성 보장받는 ‘지방분권형 국정경영체제’ 구축 필요

육동일(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3호(2019. 7.)

≫ 오늘날의 지방분권의 개념은 종전과 같이 독재 권력이 지배했던 중앙정부에 대한 단순한 저항을 의미하는 소위 “항의적 투쟁적 개념”은 퇴색하고 대신에 국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협력적 분권”으로 그 의미가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지배, 복종의 관계” 보다는 “기능분담과 공동생산의 관계로”, 그리고 “저항과 거부”의 관계보다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개혁을 지켜보면 개혁은 뿌리로부터 상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효율성 향상이나 능력의 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사회, 즉 개개인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개개인에게 넘겨주는 권력 이양(devolution)에는 세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

≫ 첫째는 작지만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그것도 주민과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핵심기능을 이양하고 주민 참여와 통제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계층제적 구조의 축소내지 완화를 통해 조직 내에서 상부층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일선사무 담당부서에 이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통제권을 지역사회에 이양하고 견고한 지역사회를 위해 주위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식이다. 분권화를 향한 선진국의 공통적인 추세,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 그리고 성숙해진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놓고 볼 때,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집권형 국정관리체제’를 이제는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소외와 격차 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통합의 꿈이 실현가능해 질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의 자치와 분권 및 균형을 위한 지역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이른바 ‘지방분권형 국정경영체제’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연구를 통해 본 경북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의 효과적인 운용방안 마련 필요

대구경북연구원 김대철 연구위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용방향』, 2019.

1. 경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 ≫ 최근 경북지역의 경제에서 제조업 기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고용창출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 경상북도는 이러한 관광수요의 증가추세에 발맞추고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경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은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 따라서 경상북도 본청 기금과 국내 유사 관광진흥기금 운용사례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유사 관광진흥기금 등의 문제점 파악을 통해 시사점 도출

- ≫ 중앙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제주 관광진흥기금의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되는 등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원 배분보다 단순 수요에 기반한 자금공급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폐쇄된 강원 관광진흥기금의 실패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 ≫ 경상북도의 경우 관광 자원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상품화되지 못하고 관광 트렌드에 뒤쳐진 결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경북 방문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분야를 보강하는데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 ≫ 경상북도 본청 기금의 경우 기금의 성격에 상관없이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예탁금(예치금)을 운용하고 있다. 국내 유사 관광진흥기금의 예치금(예탁금) 운용비율은 전체 지출액의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은 대부분의 지방기금과 같이 주요 재원을 도와 시·군의 출연금에 의존할 계획이지만, 지방재정의 만성적인 취약성과 한정된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역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3. 향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세부방안 마련 필요

≫ 첫째, 관광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이 많은 반면 관광업체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에서 융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단, 융자사업 추진 시 업체나 개인,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신·증축이나 개·보수 등에서 합리적인 융자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에 따른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건설에 필요한 융자사업 이외에 관광 홍보 개선, 인력수준 향상 등의 비용자사업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관광 수용태세 개선과 관광전문통역인력 확충, 국내 관광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자원 및 상품 개발에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은 경북 본청 기금이나 국내 유사 관광진흥기금과 같이 예치금(예탁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이 융자성 기금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융자 원금회수에 대한 위험(risk) 분산 차원에서도 예치금(예탁금)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 넷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자원확보 방안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관광객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관광활동으로 인한 자연훼손, 환경오염, 도로혼잡 등의 외부 불경제 감안), 일본과 미국, 여타 선진국에게 채택하고 있는 호텔 숙박세 도입도 중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은 2019년 성과분석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성과분석 지표에 맞게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 지방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은 기록자치의 토대

대구경북연구원 이재필 연구위원, 「경상북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

1. 기록은 사회조직의 지식자산이며 역사서술의 기초자료

- » 기록은 개인과 조직 활동의 결과로써 지역민들의 행동양식과 생활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의 기억의 흔적이나 기억을 되살리는 실마리이다. 나아가 사회조직의 지식자산이자 역사서술의 기초 자료가 된다. 기록관리 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역의 역사와 사회, 사람에 대한 기록을 총체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소위 ‘사회 전체에 대한 기록화(Documenting whole of Society)’ 접근법을 채택하고 지방정부마다 아카이브, 즉 기록원을 상설화하고 기록물 지식자원화와 시민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 » 우리나라는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록자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현재까지 경상남도과 서울특별시와 기록원을 설립하였고, 이외 많은 시·도에서 건립 기본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한 경상북도기록원 설립에 대한 기초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2. 경상북도 보존서고 조만간 포화상태 전망, 중요기록물 훼손과 멸실 우려

- » 경상북도 본청과 직속기관에서 생산되는 연평균(2016~2018) 이관대상 기록물 생산량은 9,315권(점), 23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연평균 이관대상 기록물 생산량은 21,301권(점)으로 총 30,616권(점)에 달한다. 20년 후 보존 수요량은 약 612,320권의 비전자기록물(종이기록물)이 증가하여 모두 1,466,527권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30년 후 보존 수요는 918,480권의 종이기록물이 증가하여 보존 수요량은 약 1,772,687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 현재 경상북도 본청의 보존서고는 1,330㎡(402평)이며, 본청을 포함한 23개 시·군의 보존서고 수용 능력은 평균 319㎡(96.5평), 본청을 제외한 23개 시·군의 보존서고는 평균 275㎡(83평)에 불과하다. 이러한 보존서고의 수용능력의 차이를 떠나 향후 도면 보관량이나 행정민원처리 서류 등이 지속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수용능력은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경상북도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이 없는 법규 위반 상황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장비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록이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유통되므로 전자기록물 이관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각종 디지털 기록의 훼손과 멸실, 관행적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의해 준영구 이상의 행정증빙적 역사성을 가진 기록물도 부실한 관리 속에서 사라질 버릴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3. 공유, 소통, 참여,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기록관리 총괄기관으로 자리매김 필요

》 이 연구에서는 경상북도기록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수요량을 추정함과 동시에 설립 가능 부지와 서고 규모, 조직 체계와 인력, 제도화 방향과 특성화된 기록서비스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설립 가능 부지로는 라키비움 형태를 지향하는 시대 상황을 감안할 때, 경북도청과 경북대표도서관, 문화시설 등이 밀집한 경상북도 신도시 문화1지구가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성주사고가 복원되고 있는 성주군 등 부지의 무상 제공 의지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 보존서고의 적정 규모는 경상북도 본청과 23개 시·군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의 보존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4,730㎡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록원의 조직 형태는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이 바람직하며, 인력규모는 지방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최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2과 4개 팀, 30~36명이 적정하다.

》 제도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관련 조례를 토대로 경상북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특성화 방안으로 가족의 뿌리와 문중 족보 전시 콘텐츠를 구상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북의 훈과 정신문화 관련 기획전시관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기록원은 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적 측면에서 나아가 도민에게 기록물을 공개·공유하는 기록서비스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본청과 23개 시·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한국국학진흥원을 비롯한 문화관련 기관들과의 공유와 소통, 참여,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기록관리 총괄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과후 돌봄서비스 중심 허브 기관으로 도약해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수연 연구원,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 2018.

1. 최근 마을이 함께 나서서 지역의 아동 보호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 강조

≫ 최근 마을이 함께 나서서 지역의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면서 지역 자원을 연계·활용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사회 연계가 활성화되어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경북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 및 프로그램 분석

≫ 이에 본 연구는 경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650명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이유와 센터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선호하는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고 지역아동센터장 또는 실무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 경북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위해서 ‘방과후 돌봄서비스 중심허브 기관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① 원활한 자원 연계, ② 최상의 돌봄 환경, ③ 제2의 가정, 안식처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① 지역아동센터의 인식 개선, ② 지역사회 자원연계 거점 기능 강화, ③ 지역사회 인적자원 연계 제고, ④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8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아동센터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날’ 지정·운영하며, 올해 처음 시행된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공모사업 ‘굿센스’를 확대·추진하여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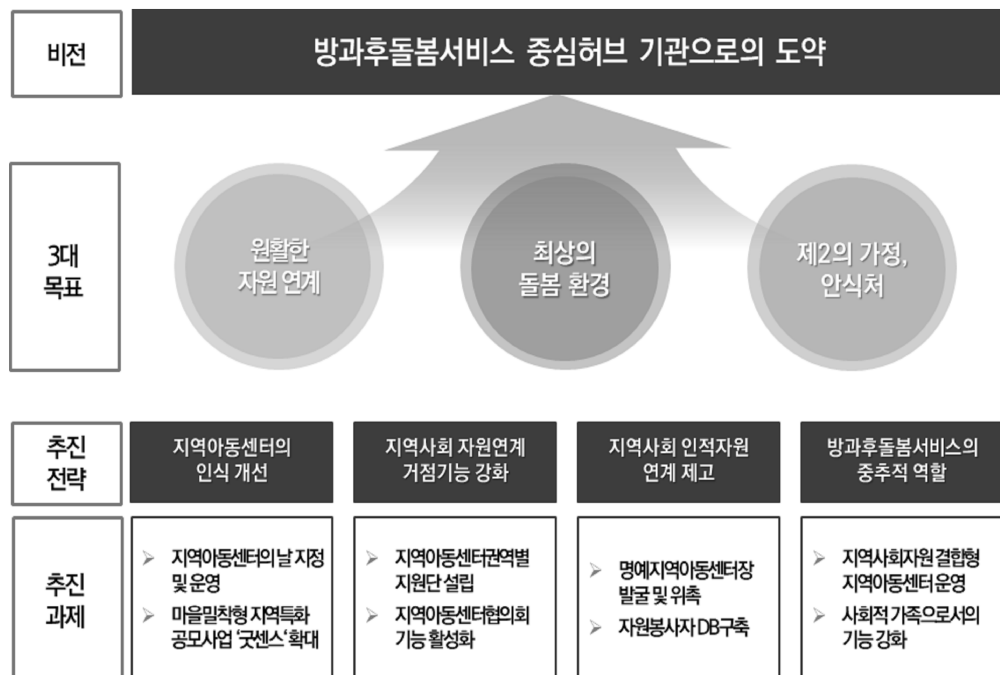
≫ 둘째, 지역사회 자원연계 거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하는데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으로는 한계점이 많다. 따라서 현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구미소재)과 함께

권역별 지원단 설립이 필요하며, 과거 거점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시군별 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 인적자원 연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을 벤치마킹하고 자원봉사자의 DB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서 지역사회자원 결합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즉,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의 작은도서관이나 복지관, 커뮤니티센터 등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결합하여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센터명을 바꿈으로써 지역의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마을의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제2의 가정으로서 돌봄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 즉 사회적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경북, 여성친워라벨 시대!! 가족여가문화 활성화해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손제희 연구원, 『경상북도 가족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2018.

1. 워라벨시대,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높아

- » 최근 직장에서의 일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향상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워라벨: Work-Life-Balance) 법적·제도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권 내 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시설과 질 높은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가족여가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 이에 본 연구는 경상북도 가족여가문화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여 진단해보고,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및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가족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가족여가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조사결과 공급과 수요 격차 발생해

- » 생활권 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가족여가시설을 원하고 있었으나 현재 공식적, 제도적으로 가족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 것으로 나타났고, 박물관에서도 가족 단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주로 교육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가족여가문화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박물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로 자녀양육기와 자녀 교육기에 집중되어 있고, 신혼부부기나 자녀성인기, 자녀결혼기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 주간과 평일 야간에 제공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수요조사에서도 가족여가문화 활동 선호 시간대가 주말이나 공휴일 낮(71.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18.1%)인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제공 시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경북지역에서 가족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향후 확대되어야 할 가족여가문화 정책으로 프로그램 홍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편이었다.

3.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가족생활주기별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 가족여가문화 활동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관심과 요구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이 차별화 되어야 하며, 전 가족생활주기 공통 여가문화 프로그램과 가족생활주기별로 요구되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제안했다.

≫ 가족여가정책 예산 확대 및 가족여가 요금할인제도 운영 :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가족여가문화 운영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특히, 외부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경제적 부담 없이 일상 속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 여가시설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요금할인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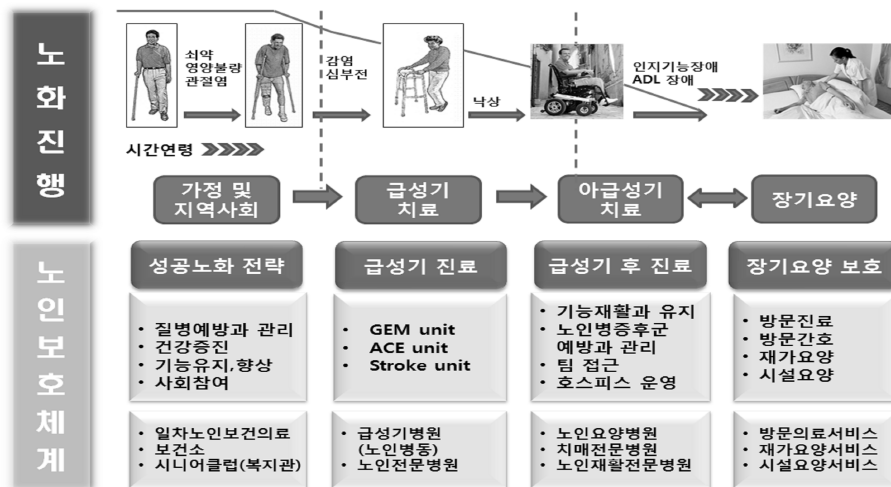
≫ 생활권 가족여가시설 확대 및 지역사회 여가시설 간 연계 :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 내 접근이 용이한 여가시설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다른 여가시설 간 연계가 필요하다. 경상북도의 지역 특성, 인구구조, 지역 인프라 자원 등을 고려해 가족생활주기에 맞는 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확대와 지역 내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원, 지역주민센터, 공공기관 시설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여가시설 간 연계를 통한 유연적 운영이 요구된다.

≫ 가족여가문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의 접근성뿐 아니라 여가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여가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요구되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가족여가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사례를 홍보하는 등 도민이 한눈에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을 제안한다.

질 높은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공 위해 두 기관 간 역할정립 및 연계 필요

경북행복재단 강민정 선임연구위원 외, 『경상북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 2018.

≫ 노인의 건강관리는 노화의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사회 거주 노화진행기-급성기 의료서비스-아급성기 의료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등의 흐름도에 따라 지속적 건강관리 또는 케어의 연속성을 달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 대상자인 노인들에게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두 기관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 GEM (Geriatric Evaluation and Management) : 노인종합 평가와 관리

ACE (Acute Care for the Elderly) : 급성기 노인질병관리

Stroke unit : 뇌졸중 치료센터

그림 1. 노년기 건강·질병관리 및 장기요양의 흐름도

≫ 경상북도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두 기관 이용자의 보호자와 관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호자가 시설 및 병원을 선택하는 결정 요인은, 요양시설 보호자는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입소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요양병원 보호자는 교통 및 지리적 위치로, 병원의 위치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기관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요양시설의 만족도가 요양병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요양시설은 직원·치료담당자들·비용관련 업무 직원·요양보호사 등의 태도와 친절 수준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요양병원은 간호사의 설명 및 친절수준과 입원절차·대기시간·입원 수속 후 대기시간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중에서 시설 내의 여러 설비들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보호자가 요구도가 더 높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두 기관 모두 비슷한 요구도를 보였다.

》 두 기관 관리자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시설 145곳 중 입소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 운영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62%이었고, 요양병원의 경우 48곳 중 4곳만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요양시설 입소자의 요양시설 재입소 운영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통적인 요양병원 입원치료 및 요양시설 재입소 운영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전문가 FGI 실시 결과, 두 기관 간 연계요양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동일한 기준인 요양시설군, 요양병원군으로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환자 배치에 대한 규정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환자 및 보호자가 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코디네이터 제도 또는 사례관리자 등과 같은 정보제공 및 의뢰 시스템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두 기관 간 연계체계를 통해 전원 및 재입소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하며, 사회적 입원 환자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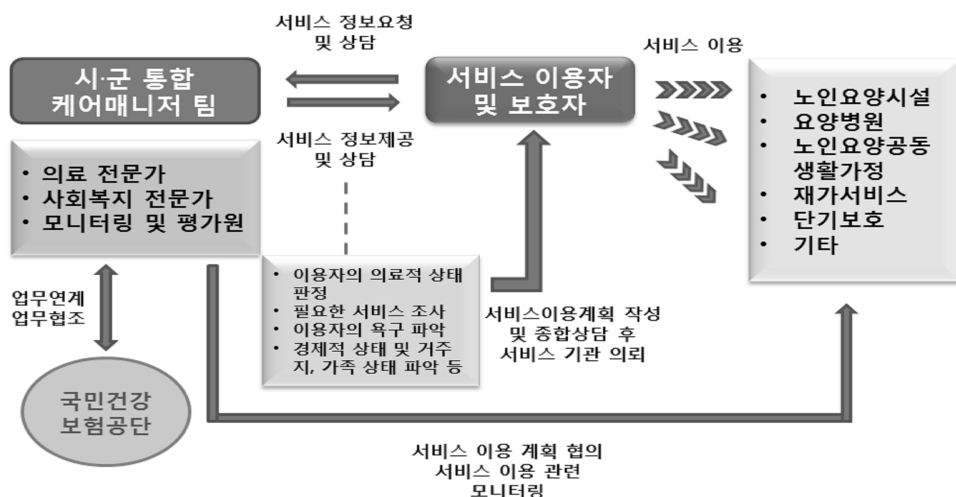


그림 2. 경상북도 통합 케어매니저 시스템(안)

발달장애인 자립 위해 경북형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델 운영 필요

경북행복재단 김동화 선임연구원 외,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운영방안 연구』, 2018.

-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1천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3,617천원)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의 61.5%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가구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북 발달장애인 가족의 67%는 경제적 수준이 “하층”으로 느끼고 있다(김동화 외, 2013).
- 》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높고, 발달장애인 대다수가 실업 상태에 있거나 보호작업장 등 낮은 수준의 훈련 수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소득 수준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낮아, 발달장애인의 낮은 소득에도 상대적인 지출은 더 높아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 특히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수는 전국에서 3번째(7.3%, 16,478명)로 많은 실정이며, 타 장애의 고령화 현상과는 달리 경북 발달장애인은 20대와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38.0%)으로 나타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준비가 특히 더 요구되는 실정이다.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북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모델’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사업 대상은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선정 이유로는 첫째, 지적장애는 77.1%가 9세 이하에서 발생하고, 14세 이하에서 발생한 비율은 88.4%이다. 많은 경우 출생 시부터 발생하여 본인의 경제 활동을 통해 자산을 모으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빈곤층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적어서 주거가 안정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이 발생하여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처하지 못하여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립하기 어렵다.
- 》 둘째, 사업 대상자 연령기준을 선정할 때, 경북의 발달장애인이 20·30대가 가장 많으며, 발달장애인은 20세 ~ 22세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로 나아가게 되기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금 마련 목적이라는 2가지 특징과 목적을 함께 고려해볼 때, 본 사업은 15~34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사업모형은 크게 4가지(가형, 나형, 다형, 라형)로 제안함. 경북이 전국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지역밀착형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설치가 요구된다. 권역은 크게 3개 권역 또는 4개 권역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거점기관 담당자의 업무효율성(출장 거리 등)을 고려할 때, 4개 권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경북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추계 모형

(단위 : 원, 명)

모 형	월 지원금	지원인원*	지원기간	연간 예산	1인당 총 지자체 지원금	1인당 총 금액 (지자체+본인부담금)
가	150,000	400	3년	7억2,000만	5,400,000	10,800,000
나	100,000	400	3년	4억8,000만	3,600,000	7,200,000
다	150,000	200	3년	3억6,000만	5,400,000	10,800,000
라	100,000	300	3년	3억6,000만	3,600,000	7,200,000

※ 본인부담금 : 지원내역 = 1:1 매칭

※ 지원인원 : 15~34세 발달장애인

: 2020년 한 해 기준 (2021년부터 지원인원 증가 필요)

- ≫ 거점기관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운영으로 수행하고, 기존의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를 전달체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개 거점기관 당 인력배치는 1명 상근 + 1명 오전근무형, 1명 상근, 기존 장애인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자산형성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를 1명 지정하고 ‘수당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처음 사업을 수행할 때는 사업관리 대상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명 수당형 또는 1명 상근형으로 사업을 시작하되, 추후 사업이 확장될 때 1명 상근형 + 1명 오전근무형으로 사업수행 인력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운영 및 지원기관은 4개 거점기관을 지원 및 교육하는 기관으로 1개 기관을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운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운영 및 지원기관 예산에는 4개 권역마다 사업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및 재무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시사정보

■ 최신 이슈

주민조례발안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이슈와 논점」 제1597호, 2019년 7월 12일

》 2019년 3월 29일 정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민조례발안(initiative)은 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하여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다. 해당 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현행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 주민의 직접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그간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용실적이 매우 적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운영현황과 최근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우선, 주민조례의 청구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청구를 위한 주민 연서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현행보다 요건을 완화했고, 인구 규모별로 서명 주민수를 달리하고 있어서 법률 통과 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입법심의 과정에서 주민발안을 한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입법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스위스의 경우 발안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전에 의회에서 발안자와의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향후 주민발안 대표자가 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등에 직접 출석해 발안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주민조례의 발안방식을 현행 간접발안과 더불어 직접발안 방식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는 제도와 국회에 제출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의 주민조례발안 청구방식은 모두 간접발안 방식으로써 조례의 제·개정 등에 대한 최종결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다. 향후 의회대표제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참여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청구 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3조의 2). 향후 조례의 신청, 서명 등 일련의 추진과정을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술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과 개선과제

류영아 · 박영원(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이슈와 논점」 제1554호, 2019년 2월 14일

- 》 1980년대까지 판공비로 불리던 업무추진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자의 재량이 높고 사후정산이 엄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 감시와 통제가 미약한 실정이다. 그 결과,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투명성 · 개방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월,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5곳(서울, 광주, 경기, 전북, 전남)에 불과하다. 대전, 세종, 경남, 경북, 제주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는 없지만 정보공개조례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 지방공사 · 공단 및 지방출자 · 출연 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실·국·과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 》 따라서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기관장뿐만 아니라 실·국장 등의 업무추진비도 공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 · 시행해야 할 것이다.
- 》 또한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에서도 각기 다른 공개 대상, 범위, 시기를 적용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행정안전부가 통일된 공개 표준안 등을 마련하여 보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전체를 한 번에 확인·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이를 지자체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개' 항목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장소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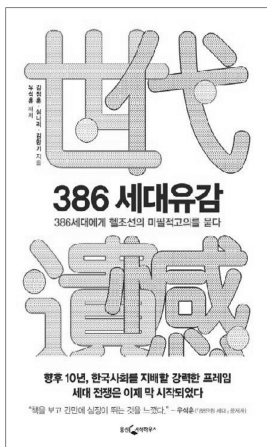
읽어 볼 만한 책



21세기 국제정치와 투키디데스

로버트 D. 카플란 지음 | 이재규 옮김 | 김앤김북스 펴냄 | 201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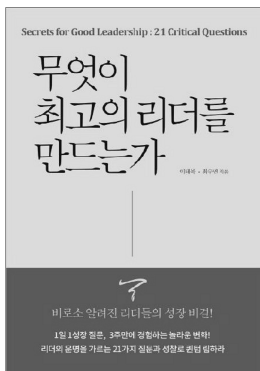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이 직면하게 될 세계는 홉스의 세계에 가깝다. 규범이 아니라 힘이, 선의보다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지배하는 세계다. 집단안보와 자유로운 시장 접근이 점차 사라지고 지정학적 충돌과 보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7년 전보다 지금의 세계가 홉스의 세계에 더 가까워졌다. 당시 이슬람 세계와 제3세계가 혼란과 무질서의 근원이었다면, 지금 세계는 이념과 가치의 동맹 체제가 무너지고 불안정한 세력균형과 지정학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처음 출간되고 17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어판이 다시 나오게 된 이유이다.



386 세대유감(世代遺憾) : 386세대에게 헬조선의 미필적고의를 묻다

김정훈, 심나리, 김항기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 2019. 7.

20대에 민주화운동을 이끌었고, 그 후광으로 30대에 정계에 진출했으며, IMF의 파고 덕분에 윗세대가 사라진 직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40대에 고임금과 부동산으로 빠르게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자신들만의 끈끈한 네트워크로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386세대. 이 책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전 방면에서 386세대가 이룬 ‘공’과 386세대가 눈감은 ‘과’에 대해 본격적으로 해부한 사회 비평서이다. 50대가 된 386세대에게는 자신들이 걸어온 4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기성세대의 역할을 고민하게 해주며, 20~30대 청년세대에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헬조선의 연원을 찾게 해주는 이 책은 유례없는 장기 집권 과정에서 386세대가 자신들이 꿈꿨던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는지, 앞으로도 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지휘권을 맡겨도 될 것인지를 묻는다.



무엇이 최고의 리더를 만드는가

이태복, 최수연 지음 | 패러다임 펴냄 | 2019. 6.

현장 리더부터 CEO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좋은 리더로 인정받는 수천 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질문을 통한 자기 성찰’을 으뜸으로 꼽았다. 이들이 꼽은 질문들은 어떤 것일까? 이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을 비춰보는 성찰을 할까? 이 책은 이에 대한 답을 생생하게 숨 쉬는 현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시한다. 나아가서 행동경제학 이론을 접목하여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낸다. 그래서 더욱 더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내용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더 공감이 가고 나도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킨다. 흔히 리더십을 아주 큰 것으로 생각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낀다. 이 책의 질문들과 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고민은 쉽게 해결된다. 어느새 당신의 리더십은 한층 더 자라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을 키우고 싶은 모든 리더와 예비 리더를 위한 책이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하여

이주희 지음 | 프시케의숲 펴냄 | 2019. 4.

이 책에서는 ‘정치적 올바름’, 즉 PC운동(Political Correctness)을 둘러싼 4인 4색의 뜨거운 논쟁이 펼쳐진다. 정치적 올바름은 편견 없는 언어를 사용하자는 최초의 취지에서 점점 외연을 넓혀 각종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억압적이며 역차별이라는 비판 또한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은 과연 진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성별, 인종이 여러 이슈를 놓고 갈등하는 상황을 성찰한다.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입법정책 정보

Legislation & Policy Information

입법 정책 정보

제11대 의회 제5호

(통권 제33호)

발행인 경상북도의회위원장 장경식

편집인 입법정책관 박충근

발행일 2019. 9.

발행처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편집 및 교정 입법정책관실 ☎ 054)880-5064